



제 360 호 2016. 6. 29. (수)

선 람	기 관 의 장

**고 시**

제2016-180호	김해도시관리계획(시설:학교) 결정(변경:경미한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 .....	18527
제2016-181호	김해(장유)도시계획시설(도로:중3-7, 소2-20호선)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.....	18528
제2016-182호	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.....	18529
제2016-183호	하천점용허가 고시 .....	18530

**공 고**

제2016-1744호	김해진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 .....	18531
-------------	--	-------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## 김해도시관리계획(시설:학교) 결정(변경:경미한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우리시 동상동 534번지 일원의 김해도시관리계획(시설:학교) 결정(변경:경미한사항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[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서 열람가능]는 김해시청 도시계획과(☎330-3595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6년 6월 29일

**김 해 시 장**

### 1. 도시관리계획(시설:학교) 결정(변경) 조서

#### 가. 도시관리계획(시설:학교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21	학교	초등 학교	김해시 동상동 534 일원	24,882	감) 206	24,676	78.1.15 (경고282호)	최종변경 16.2.26 (김고58호)

#### 나. 도시관리계획(시설:학교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21	학교 (동광초등 학교)	• 학교 면적 축소 - 면적 : 24,882㎡ ⇒ 24,676㎡ 감) 206㎡	•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에 제척코자 함

### 2. 관계도면 : 실음생략

# 김해(장유)도시계획시설(도로:중3-7, 소2-20호선)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

김해도시계획시설(도로:중3-7, 소2-20호선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동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.

2016년 6월 29일

김 해 시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김해시 신문동 654-1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- 사업의 종류 : 김해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7, 소로2-20호선)사업
  - 사업의 명칭 : 장유프라자 진입도로 개설사업
3.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
  - 사업시행면적 : 2,922㎡
  - 사업시행규모

노 선 명	도시계획결정		금회시행규모			비고
	길이(m)	폭(m)	길이(m)	폭(m)	면적(㎡)	
합 계	2,040.0	8~12	242.0	8~12	2,922	
중로3- 7호선	130.0	12.0	130.0	12.0	2,922	
소로2-20호선	1,910.0	8.0	112.0	8.0		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- 성 명 : 에스티에스개발(주) 대표 김현석
  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-2 삼성제일빌딩 3층
5. 사업기간
  - ▮ 당초 : 2007. 03. 08 ~ 2016. 06. 30
  - └ 변경 : 2007. 03. 08 ~ 2017. 06. 30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: 변경없음
7.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사유
  - 일부 편입부지 매입기간 부족.
8. 관계도면 : 실음생략 【김해시청 도시계획과(☎055-330-4703)에 비치】

#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
2016년 6월 29일

김 해 시 장

## 1. 제한지역

위 치	면 적	용도지역·지구	비 고
김해시 삼방동 103-1번지 일원	270,150㎡	일반공업지역	

## 2. 제한사유

- 대상지는 안동공업지역 일원으로서, 기존 공장의 이전으로 인해 나대지로 계속 방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현재 가동중인 안동공업지역의 점진적 이전 유도과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을 통한 선도적 사업 모델 정립을 통해 대상지의 계획적 개발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유도하고
- 현재 추진중인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자 함.

## 3. 제한대상 행위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
- 「주택법」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
- 「건축법」 제8조,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·신고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」 제13조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
- 단,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이전에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 및 용도변경 행위와 이미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개축, 재축 및 용도변경 행위 허용

## 4. 제한기간 : 고시일(공보게제일)로부터 1년간

## 5. 관계도면 : 실음생략(김해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☎055-330-3591)

## 하천점용허가 고시

1. 『하천법』 제33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김해시청(건설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6년 6월 29일

김 해 시 장

허가 내용

하천의 명칭		해반천(지방하천)
점 용 자	주 소	김해시 김해대로 2401
	성 명	김해시장
점 용 지 역	위 치	김해시 구산동 1072-9번지 일원
	면 적	○ 영구점용 : A = 220㎡
점 용 목 적	공중 화장실 설치	
점 용 내 용	○ 하천 점용 : 영구점용 A = 220㎡ - 공중 화장실 설치 : 1식(220.0㎡)	
점 용 기 간	○ 영구점용 : 영구	

## 김해진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

1.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에 김해진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『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』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지구 지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년 6월 29일

김 해 시 장

### 가. 지구개요

- 1) 지구명 : 김해진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
- 2) 위 치 :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
- 3) 면 적 : 472,968㎡

나. 도시관리계획사항 : 자연녹지지역, 제1종일반주거지역

다. 지구지정 제안자 : 한국토지주택공사

라.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: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(2016.6.29~2016.7.13)

마.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: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 (☎ 055-330-3663)

김해시 진례면사무소 (☎ 055-330-8668)

LH 경남지역본부 (☎ 055-210-8519)

바. 열람도서 : 게재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

### 사. 기타

- 1) 열람사항은 개별 통보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.
- 2)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,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